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50119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25-01-24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5-01-24

gfd2015@naver.com

[고봉당]

정 보 공 개 서

(주)조은음식드림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5. .

[(주)조은음식드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2길 50, 4층,5층(논현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980.9730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2.980.9730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http://ftc.go.kr/data/hwp/20080306_103723.hwp)
(<http://www.ftc.go.kr/laws/laws/laws.jsp?lawDivCd=08>)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조은 음식드림	고봉당 외 6개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2길 50, 4층,5층(논현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4.01.29	2014.02.10	안광선	02.980.9730	
	법인등록번호	110111-5328946	사업자등록번호		212-86-0837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안광선/ (주)조은 음식드림	오복 오봉집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2길 50, 4층,5층(논현동)		
		경아식당			
		태태삼겹			
		딱이야!두마리치킨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대마족발	안광선	02.980.9730	02-985-6674
		맛나슈퍼			
고봉당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특수관계인	안광선/ (주)굿푸드 테이스티	남천1번국밥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136 6층 602호(미아동, 풍양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안광선	02.980.9730	02-985-6674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사내이사	권경진/ (주)조은 음식드림	오복 오봉집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2길 50, 4층,5층(논현동)		
		경아식당			
		태태삼겹			
		딱이야!두마리치킨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대마족발	안광선	02.980.9730	02-985-6674
		맛나슈퍼			
고봉당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특수관계인	권경진/ (주)굿푸드 테이스티	남천1번국밥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136 6층 602호(미아동, 풍양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안광선	02.980.9730	02-985-6674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주)조은음식드림)가 다른 기업(경아식당)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경아식당	경아식당	2022.03.28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85. 1층 103호	허태영
가맹본부((주)조은음식드림)가 다른 기업(단F&B)의 가맹사업(태태삼겹)을 인수함	단F&B	태태삼겹	2022.03.20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120 103동 7층 5호	김대우
가맹본부((주)조은음식드림)가 다른 기업((주)굿푸드테이스티)에게 가맹사업(남천1번국밥)을 양도함	(주)굿푸드테이스티	남천1번국밥	2024.02.26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136 6층 602호 (미아동, 풍양빌딩)	안광선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이후, [고봉당]이라고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고봉당	
상 호	고봉당 oo점	
상표(서비스표)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1,609,850	1,039,955	569,894	2,476,699	135,819	197,764
2022	4,926,825	2,459,396	2,467,428	17,111,800	2,291,347	1,897,534
2023	10,639,589	6,429,651	4,209,938	30,152,878	2,369,497	2,364,244

※ 2024년도의 재무상황은 2025년04월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2024년도의 재무상황은 2025년04월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안광선	대표이사	2014.01.29.~현재	(주)조은음식드림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권경진	사내이사	2020.01.29.~현재	(주)조은음식드림 이사	회사 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	20

※ 이에 대한 2024년도 상황은 2025년04월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조은음식드림	가맹사업경영	2016.03.26.~현재	오복 오봉집이라는(20201227) 외식(한식) 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조은음식드림	가맹사업경영	2016.03.26.~현재	맛나슈퍼라는(20160531) 외식(실내포장마차) 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조은음식드림	가맹사업경영	2021.03~현재	딱이야!직화두마리치킨이라는 (20210538)외식(치킨)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조은음식드림	가맹사업경영	2018.02.06~현재	대마족발이라는(20180260) 외식(한식) 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조은음식드림	가맹사업경영	2022.01.29.~현재	경아식당이라는(20220096) 외식(한식)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조은음식드림	가맹사업경영	2022.01.10.~현재	태태삼겹(20210665)이라는 외식(삼겹살및짜장면)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안광선/ (주)굿푸드테이스티	가맹사업경영	2024.02.26.~현재	남천1번국밥(20240202)이라는 외식(한식)가맹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이사)	권경진/ (주)굿푸드테이스티	가맹사업경영	2024.02.26.~현재	남천1번국밥(20240202)이라는 외식(한식)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상표권자	존속기간 만료일
	서비스표	2024.07.19	4022241210000	안광선	2034.07.19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가맹사업기간 동안 위 서비스표 사용에 관한 권리를 권리자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고봉당] 가맹사업 현황

1. [고봉당]을 시작한 날 : 아직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2. [고봉당]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조은음식드림	고봉당	안광선	2024.06.17~현재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2길 50, 4층,5층(논현동)

3. [고봉당] 업종

영업표지	업종	
고봉당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쭈구미볶음/등갈비요리 전문점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고봉당]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이에 대한 2024년도 상황은 2025년04월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5. 최근 3년간 [고봉당]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 이에 대한 2024년도 상황은 2025년04월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6. [고봉당]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고봉당]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 12.31	2022. 12.31	2023. 12.31
가맹본부	(주)조은음식드림	대마족발	20180260	외식	27/0	9/0	5/0
가맹본부	(주)조은음식드림	맛나슈퍼	20160531	외식	16/0	5/0	4/0
가맹본부	(주)조은음식드림	오봉 오복집	20201227	외식(한식)	51/0	149/0	213/0
가맹본부	(주)조은음식드림	딱이야! 직화두마리치킨	20210538	외식업(치킨)	5/0	0/0	0/0
가맹본부	(주)조은음식드림	경아식당	20220096	외식(한식)	0/0	11/0	35/0
가맹본부	(주)조은음식드림	태태삼겹	20210665	외식(삼겹살 및 짜장면)	0/0	1/0	2/0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안광선/ (주)굿푸드테이스티	남천1번국밥	20240202	외식(한식)	0/0	0/0	0/0
특수관계인 (이사)	권경진/ (주)굿푸드테이스티	남천1번국밥	20240202	외식(한식)	0/0	0/0	0/0

※ 이에 대한 2024년도 상황은 2025년04월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7. 바로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평균매출액(직영점매출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지역	2023년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						비고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간 평균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이에 대한 2024년도 상황은 2025년04월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8. [고봉당]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단위, 일)
2023	0	0

※ 이에 대한 2024년도 상황은 2025년04월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고봉당] 가맹점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023.01~2023.12	1,014,823	858,087	156,736	
광고	(비공개)	2023.01~2023.12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판촉	-	-	-	-	-	

※ 위 지출내역은 (주)조은음식드림이 운영하는 전체 가맹사업(대마족발,맛나슈퍼,오복오봉집,떡이야!직화두마리치킨,경아식당,태태삼겹) 관련하여 광고선전비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 이에 대한 2024년도 상황은 2025년04월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미아동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51	02-983-163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가맹계약 체결 후 1일내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계좌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신한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 전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범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고봉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주)조은음식드림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주)조은음식드림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2,000				
가맹비 (가입비)	11,000	계약체결일 다음날까지	가맹계약서 제14조 또는 가맹사업법 제 10조상의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교육비	11,000	계약체결일 다음날까지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 약 해지	교육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단, 서울 및 경기 이외의 지역에서 가맹점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1일당 20만원(VAT별도)의 교육비를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없음			
계약이행보증금	없음	계약체결일 다음날까지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22,000
가입비	11,000
교육비	11,000
계약이행보증금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vat포함)
총계		86,900	3,476			약82.6㎡ (실평수 약25평)
인테리어	협력업체	46,750	1,870	별도계약에 의함	별도계약에 의함	실내공사
간판	협력업체	5,500	220	별도계약에 의함	별도계약에 의함	전면
주방설비/집기	협력업체	33,000	1,320	별도계약에 의함	별도계약에 의함	직화기, 저장냉장고 등
판촉물 등	미정	1,650	66	별도계약에 의함	별도계약에 의함	액자,포스터 등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가맹계약시 제공되는 실제 견적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비용: POS,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당사의 인테리어 노하우제공 대가로 평당 33만원(VAT포함) 내부인테리어 공사이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약 82.6㎡(실평수 약25평) 미만의 가맹점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최소 약25평 상당의 설비가 필요하므로 약25평에 해당하는 설비 비용이 발생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주체 : 가맹점사업자 지원 : 당사 점포개발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분석 → 최적의 입지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미성년자가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한편,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실비	광고 시행 전 별도 통지	광고 미시행	광고시행후	V. 9. 1) 참고
수시교육 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별도계약에 의함	별도계약에 의함	교육실시 후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실비	별도계약에 의함	별도계약에 의함	취소기한 경과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로열티	가맹본부	월총매출 x2.2%	익월10일까지	미도래한 가맹계약기간 동안의 로열티	기 도래한 가맹계약기간 동안의 로열티	부가세 포함
유지보수비용	협력업체	실비	당일까지	-	-	실제보수비용 및 출장비
점포환경 개선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별도계약에 의함	별도계약에 의함	취소기한 경과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참고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2%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연체대금의 채권상환은 비용, 이자, 선 발생채권 순으로 상계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 이에 대한 2024년도 상황은 2025년04월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고봉당]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본 계약이 해약 내지 해지로 종료되었을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채무 전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한 조치를 실행하고 가맹본부에게 30일 이내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즉시 이러한 조치를 기일 안에 실행하지 않을 경우 브랜드에 관해 이미지를 손상시키므로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고, 기간만료 후 가맹본부가 이러한 조치를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고봉당]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 기호도 사용하지해서는 안 됨.
 - 노하우 사용을 중지할 것.
 - 매뉴얼, 기타 가맹본부로부터 대여 받았거나 제공받은 문서·도면·기타 도서 전부를 모든 사본과 함께 가맹본부에게 반환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처분할 것.
 - 가맹본부는 위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차입한 보증금으로 부터 변제충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해야 함.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고봉당]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	규격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해당없음				
2					
3					
4					
5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고봉당]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 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총 거래금액	비고
원부재료		해당없음			

- 2) 당사가 [고봉당]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 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쭈구미볶음/등갈비요리 전문점	고봉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가맹계약서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쇼핑몰 등)의 경우에는 일반 매장(로드매장)의 영업지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영업지역은 가맹계약서에 별첨하는 영업지역을 우선으로 합니다.

※ 가맹점의 배달영업 가능거리에 대해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변경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고봉당]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단위: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0%	0%	0%

※ 이에 대한 2024년도 상황은 2025년04월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 이에 대한 2024년도 상황은 2025년04월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고봉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 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7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7조
○ [고봉당]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7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7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당사에 지급할 공급품 대금 및 기타 채무의 미지급금이 거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32조1항
2. 기업로고나 브랜드 로고를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지 않거나 변경하는 경우와 당사의 상호, 당사가 사용할 것을 공지한 상호, 당사가 사용하였던 상호를 당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제32조1항

3. 당사가 당사와 을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기업 로고 및 브랜드 로고를 변경·폐지하였을 때, 기존의 기업 로고 및 브랜드 로고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제32조1항
4. 위생적이고 청결한 점포를 위해 인테리어·설비의 내구연한 만료시점에, 객관적 근거에 의한 필요성 판단 시 이전 또는 이후 점포의 노후 시설 및 설비교체 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32조1항
5.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동의 없이 월간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한 경우	제32조1항
6. 매뉴얼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당사 수퍼바이저의 가맹점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제32조1항
7. 브랜드의 통일성과 제품의 품질을 보호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가맹점 위생 과 제품 품질의 표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1항
8.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당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와 고객정보를 고객과의 계약내용 또는 법령의 허용범위 이외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제32조1항
9.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매뉴얼에 따라 시공을 하지 않거나,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32조1항
10. 가맹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영업을 행하는 경우	제32조1항
11.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판촉활동에 동참을 거부하거나 당사와 합의한 판촉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조1항
12.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해진 공통제품 외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원재료를 전용하는 경우	제32조1항
13. 고객의 컴플레인 발생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와 협의없이 판매가격을 정하여 고객에게 반복적인 컴플레인이 제기되는 경우	제32조1항
14. 재계약 시점에서 로열티를 본사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32조1항
15. 기타 가맹계약 시에 합의한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32조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2조2항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2조2항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2조2항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2조2항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2항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2항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2조2항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2조2항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2조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요될 경우에는 비용 필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개시 후 3월내 가맹본부에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앞 내용을 참고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	-	-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고봉당]과 동일업종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쭈구미볶음/등갈비요리 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시장 조사 포함, 30일 가량 요)→허가여부 통지→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고봉당]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자음	주6일 이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일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매장운영 및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S/V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압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수시	S/V	
POS사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S/V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 기준

당사는 [고봉당]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홍보+ 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균분	전체 광고 및 판촉계획 공고(행사의 명칭/실시기간/분담비율/분 담한도 등을 제시) → 가맹점의 광고 등 참여 여부 결정(광고의 경우 가맹점 50%이상, 판촉의 경우 가맹점70% 이상 동의)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가맹점사업주 부담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총 광고비 지출중 일부(50%)로 하며, 가맹점사업자 간에는 균
분하여 금액을 부담한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
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
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
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
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가맹계약서 제35조 4항)
-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라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경우 위약금으로 가맹금의 20%, 15% 또는 10%를 가맹본부에
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맹계약서 제36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비밀유지 의무, 계약기간내에 동종
영업금지 의무, 자점매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금삼천
만원(₩30,000,000)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용상품에 대해 부당한 자
점매입(사입)을 하는 경우, 지정된 위약금과는 별도로 이행강제금의 명목으로 부당한 자
점매입(사입)행위가 종료될 때 까지 로열티가 4.4%(부가세포함)로 인상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침해일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일 금삼십만원(W300,000)씩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해약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됩니다.(가맹계약서 제36조 참고)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제6조제1항 가맹비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제6조제1항 가맹비의 3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제6조제1항 가맹비의 50%

※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닌, 명시된 가맹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개점 후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가맹계약 중도해지시점과 위약금
지난 6개월간 평균 월매출액 x5% x잔존개월수 (영업월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잔존 기간의 월평균매출액으로 산정함.)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8~9페이지참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D-29(1일)	8~9페이지참고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8~9페이지참고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위생 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팀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위생 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팀

※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가맹본부 인력에 대한 지원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인력지원비용은 1일당 금일십만원(VAT별도, 1인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되는 지역 또는 지원 형태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맹계약서22조 참고)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조기 안정화 자금지원	해당없음	-	-	-	-
매출부진 경영지원	해당없음	-	-	-	-

VIII.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고봉당]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1) 신규교육		운영, 매뉴교육	집단강의	가맹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교육
		실 매장에서의 서비스 방법	실습교육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수시교육	가맹점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개별 또는 집단강의	개별 또는 집단강의	필수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개별교육	선택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개별교육	개별교육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고봉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개점 전 교육	4일	11,000	조리교육 및 현장교육 포함
특별 교육	시간(협의)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되거나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이에 대한 2024년도 상황은 2025년04월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이에 대한 2024년도 상황은 2025년04월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 10개 교봉당 가맹점리스트]

지역	점포명	경영주명	전화	주소

[별첨 : 구입권장품목] [2024.12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3-1 : 구입강제품목] [2024.12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3-2 :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및 결정기준] [2024.12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주요 공급품목 및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023년 재무상태표-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023년 재무상태표-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023년 재무상태표-3]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023년 손익계산서-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023년 손익계산서-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022년 재무상태표-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022년 재무상태표-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022년 손익계산서-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022년 손익계산서-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021년 및 2020년 재무상태표-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021년 및 2020년 재무상태표-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021년 및 2020년 손익계산서-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021년 및 2020년 손익계산서-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